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

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·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23일(화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3년 4월 27일(토)

4. 개정근거

가.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 시행)

제4조

다. 「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」

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하향조정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며, 국민권익위원회 「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」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제척, 기피,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6. 관계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